

(법령해석) 농지로 이용 중이나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임야는 영농보상대상이다.

[국토부 2012. 1. 5. 11-0737]

질의요지

지목이 임야인 타인 소유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여 공익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려 왔으나, 해당 토지가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토지에서 행한 경작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업손실 보상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지목이 임야인 타인 소유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여 공익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려 왔으나, 해당 토지가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토지에서 행한 경작은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산지로서의 관리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